
인권헌장

2022. 3. 28



제정목적

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, 임직원, 소비자, 협력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존중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.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,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제정한다.

정책적용범위

본 헌장의 적용범위는 주식회사 GS의 임직원으로 한다. GS 계열사의 경우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권고한다. 다만, 본 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.

기본원칙

본 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,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), 국제노동기구(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)의 핵심협약, OECD 실사 가이드라인(OECD Due Dilige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)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차별금지

-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인종, 성별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, 채용, 승진, 교육, 임금, 복리후생 등 인사 프로세스 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,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.

2. 근로조건 준수

- 사업을 영위하는 현지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. 또한,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.

3. 인도적 대우

-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,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, 학대,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.

4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
-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, 회사와 원활히 의사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 또한 노동조합 결성,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5.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-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, 임직원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도 강요하지 않으며,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.

6. 산업안전 보장

-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,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,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.
-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.

7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

- 주요 공급사,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, 필요할 경우 공급사 및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8. 지역주민 인권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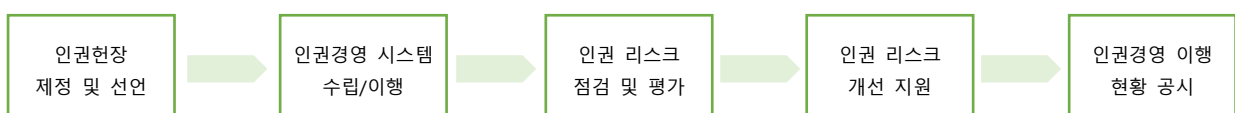
-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,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, 거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.

9. 고객 인권 보호

-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,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광고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, 기업이 수집·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.

인권 리스크 관리체계

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한다. 또한 이러한 인권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

부칙

이 정책은 2022. 3. 28일부터 시행한다.